

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386,819,285	11,604,579
1. 일반회계	377,719,979	11,331,599
2. 특별회계	9,099,306	272,979
의료보호기금	868,449	26,053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106,000	63,180
주차장	4,817,346	144,520
주거환경개선사업	347,001	10,41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277,000	8,310
지하수관리	683,510	20,505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102,579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